이 자료는 2016년 3월 31일(목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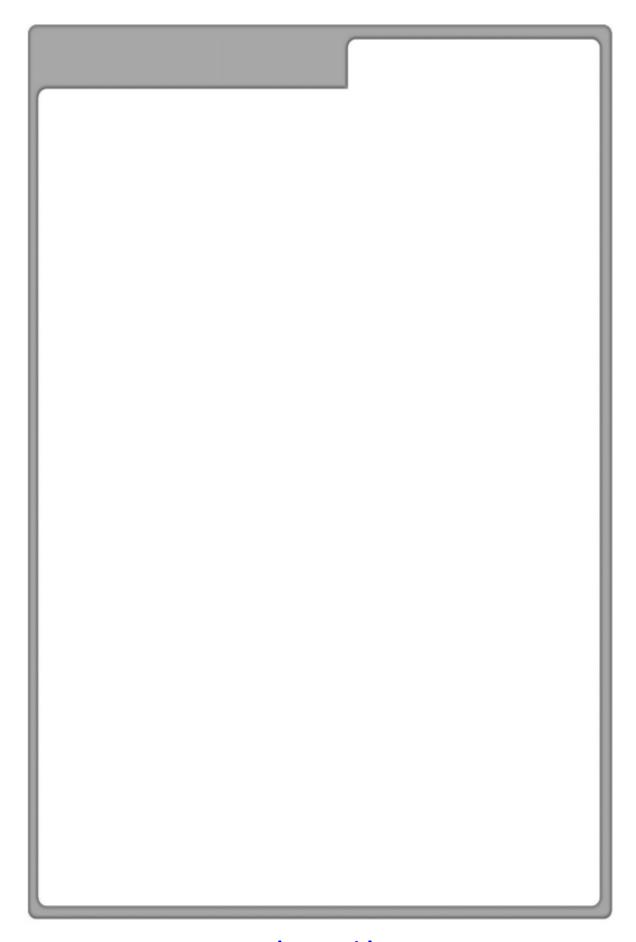
경제관계장관회의 16-5-1

공개

보세판매장 (면세점) 제도 개선방안

2016. 3.31.

관계부처 합동



순 서

- 1. 추진배경 1
- Ⅱ. 면세점 산업 주요 현황 2
- Ⅲ. 면세점 제도현황 및 평가 4
- ₩.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6
 - 1. 경쟁력 제고 7
 - 2. 시장질서 확립 8
 - 3. 사회적 역할 확대 9
- V. 추진과제 이행계획 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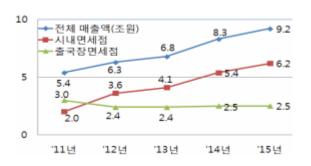
▮. 추진 배경

- □ (시장동향) 그간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관광객 수 증가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15.1% 성장 ('15년 9.2조원)
 -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33.8%가 한국 선택 시 1순위로 '쇼 핑'을 고려하여,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면세점이 크게 기여
 - * 방한외국관광객의 한국선택 시 고려사항('14년, 문화체육관광부) : 쇼핑

(33.8%) > 자연풍경(30.1%) > 역사(6.8%) > 음식/미식 탐방(5.5%) > 기타

<'11~15년 면세점 시장 성장 추 이>

<'11~15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추이>





(자료 : 문화체육관광부, 관세청)

- □ (그간 정책방향) 면세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'12년 국회 등에서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
 - 이에 따라 '13년에 특허기간 단축 (10→5년) 및 특허 갱신제
 도 폐지, 중소.중견기업 면세점 참여를 확대*
 - * 중소·중견 면세점 특허수 비율 하한 설정 : 중소·중견기업은 총 특허수의 30% 이상,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총 특허수의 60% 미만으로 제한
- □ (제도개선 필요성) 면세점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, 우리나라 면세점은 특허기간 단축 등에 따라 경쟁력 약화 위기 발생
 - 2억 명의 중국인 관광객('20년 전망) 유치를 위한 면세점 육성·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일본·중국 등 주변국 경쟁 심화
 - ◇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통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육성해야 할 산업의 관점에서.
 - 면세점 경쟁력 제고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

Ⅱ. 면세점 산업 주요 현황

- □ (특허 수) '16.3월 현재 **면세점은 총 49개** (중소·중견기업은 27개)
 - (유형별) 현재 우리나라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 21개, 출국장
 면세점 22개, 지정 면세점 5개, 외교관 면세점 1개로 구성
 - (지역별) 시내 면세점 21개는 서울 9개, 제주 3개, 부산 2개

및 울산·창원·대전·대구·수원·청주·인천 **각각 1개**로 구성

□ (매출액) 우리나라의 면세점은 최근 10년간 연 15.1% 성장하여, '15년 매출액은 약 9.2조 원으로 세계 1위 수준 (세계 매출의 12.3%)

구 분	'05	'08	'11	'13	'14	'15
매출 액(억 원)	22,464	31,274	53,716	68,326	83,077	91,984
GDP대비 비 중	(0.24%)	(0.28%)	(0.40%)	(0.48%)	(0.56%)	(0.62%)

- ※ 국가순위('14 GenerationResearch): **韓(1위,12.3%)** 中(2위,7.7%) 美(3위,5.9%) 英(4위,5.3%)
- ※ 기업 순위(`14 Moodty Report): 스위스Dufry(1위), 美 DFS(2위), <u>롯데(3위)</u>, 佛 LS TR(4위), 신라(7위)
- (유형별) 총 매출 중 시내 면세점은 67.2%, 출국장 면세점은 26.9% 차
- (기업규모별) 총 매출 중 대기업은 87.3%, 중소·중견기업은 6.2%차지
 - 대기업 및 상위 2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*은 소폭 감소 추세
 - * 대기업: ('13년) 88.1% → ('14년) 88.3% → ('15년) 87.3% 상위 2개 기업: ('13년) 82.9% → ('14년) 81.3% → ('15년) 79.6%
- (매출구성) 총 매출 중 국산품 매출액 비중은 37.0% 수준이며, 중소·중견기업 제품 판매 비중은 12.8%
 - Whoo, 설화수, 쿠쿠, MCM 등 **국산 브랜드의 성장에 따라 매 출액 중 국산품 비중**은 지속적인 **증가추세***
 - * 국산품 비중(%): ('11년) 18.1 → ('12년) 19.8 → ('13년) 22.6 → ('14년) 31.0 → ('15년) 37.0
- □ (고용) 면세점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1.8만 명
 - 이 중 면세점 업체가 직접 고용하고 인력은 2,500명(13.8%)이며, 약 15,000명(86.2%)은 브랜드업체 파견직원 등 비소속직원임
- □ (경영 여건) 외래 관광객.매출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. 신규 진입 면세점과 중소·중견기업 면세점은 경영 정상화에

애로

- (외국인 관광객) 메르스 영향에 따라 '15년 방한 외국인 관광 객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, '16년에는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
 - ※ 외국인 관광객 수(만명, 문체부): (14) 1,420→(15) 1,323→(16) 1,650(목표)→(17~18) 2,000(목표)
 - 다만, 면세점에서의 **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*은 감소 가능**
 - * (면세점 전체) ('11) 248.6\$ → ('13) 314.7\$ → <u>('14년) 347.4\$ → ('15</u>년) 339.3\$
- (상품 구성) 신규 진입 기업 및 중소·중견기업 면세점을 중심
 으로 소위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에 어려움 발생
 - 다만, 국산 화장품* 등 상품 다변화 가능성도 증가
 - * 품목별 매출 비중('15) : <u>화장품 45.5%</u> > 가방류 16.0% > 시계 9.6% > 담배 5.0%

<면세점 내 브랜드별 매출순위>

순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1위	루이비통	루이비통	루이비통	루이비통	루이비통	후
2위	샤넬	샤넬	샤넬	까르띠에	설화수	설화수
3위	구찌	까르띠에	까르띠에	샤넬	까르띠에	루이비통
4위	까르띠에	SK2	SK2	롤렉스	샤넬	헤라
5위	에스티로 더	에스티로 더	롤렉스	프라다	ᅙ	롤렉스

- (글로벌 경쟁 심화) 외국에서도 면세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
 편. 글로벌 면세점 기업들은 점차 대형화 추세
 - (면세점 육성) 일본·태국 등 주변국에서 면세점 확대 정책 추 진
 - *(일본) 도쿄에 최초로 시내면세점을 설치('16.1월)하고 전국으로 확산 계획 (태국) 비자발급 요건 완화, 소비세(30%) 폐지, 면세범위 확대 등 추진 (일본.태국의 '15년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각각 110%, 71% 증가)
 - (대형화) 글로벌 면세점들은 M&A를 통해 점차 대형화*
 - * 세계 **5대기업 매출비중**(%) : ('10) **26.9** → ('12) **30.1** → ('14) **33.4**
- ※ (영업 이익률) '15년 주요 면세점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6.3%로,

- Ⅲ. 면세점 제도현황 및 평가
- 1 특허기간 및 특허갱신
- □ (현황) '13년부터 특허기간 단축(10년→5년) 및 갱신제도 폐지
 - '15년 말 4개 면세점의 특허만료 (롯데소공, 부산신세계, 롯데월드 타워, SK워커힐)에 따른 심사 결과 2개 기업(롯데월드타워, SK워커 힐)이 탈락
 - 신규기업으로서 **신세계DF**, **두산 선정**
 - * 탈락한 롯데월드타워, SK워커힐은 각각 '16.6.30일, '16.5.16일 폐점 예정
- □ (평가) 5년의 특허기간 제한은 투자위축과 매장구성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고용불안 야기
 - 특허종료기업은 근로자 해고.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 발생
 - * 폐점 예정인 SK워커힐 + 롯데월드타워의 2,122명의 근로자 중 롯데소속직원 (138명), SK에서 타사로 승계된 직원(64명) 外 1,920명(약 90%)의 고용이 불확실 (16.3월기준)
 - 2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, 심사 등 운영
- □ (현황)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 일정 요건* 충족 시 신규 특히 발급이 가능하며, 특히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사업자 선정
 - * ①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, 이용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%이상 ②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
 - 특허 심사 종료 후 참여 기업에게 해당 기업의 총점을 공개
- □ (평가) 관광산업 경쟁력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여 특허발급을 검토할 필요
 - 특허심사 과정에서 공정성.투명성 시비 등 불필요한 논쟁을

방지하여 특허 심사 등 운영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

- 3 특허수수료 수준
- □ (현황)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대비 0.05% (중소.중견기업은 0.01%) 로 '15년 특허수수료는 약 40억 원 수준 (일반회계 세외수입)

구 분	한국	중국	일본	태국	말레이시 아
징수기준	매출액	매출액	면적	정액	정액
연간 수수료 (만원)	(대기업) 0.05% (중소중견) 0.01%	1%	(5백㎡미만) 150 (7만㎡초과) 1,500	면세점 당 100	면세점 당 22
면세점 별 부담수준 (한국 100)	100	10,000	15	1	0.22

- □ (평가) 면세점 시장 규모('15년 9.2조 원)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 를 적정수준 확대하여 관광부문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필 요
 - 다만,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는 신규기업,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면세점에 대한 부담 고려 필요
 - 4 면세점 內 중소.중견기업 제품 판매
- □ (현황) 특허기간 만료 등에 따른 신규특허 발급 시 면적의 20%를 중소·중견기업 제품 매장으로 할당 ('15.7월, 경제관계장 관회의)
 - 특허 심사 시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음
- □ (평가) '15.12월 현재 면세점 내 중소.중견기업 제품의 매출 비 중은 11.9%로 매장 면적 비중(17.8%)에 크게 하회
 - * 대기업 면세점 內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면적 비중 : <u>17.8%</u> ('15년) 대기업 면세점 內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비중 : 11.9% ('15년)
 - 면세점에서 중소·중견기업 제품 면적 및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
 - 지역특산품 등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필요
 - ₩.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

기는 당당

- ◇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 조성,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면세점 경쟁력 제고
- 면세점 특허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 → 면세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.중소기업 육성 등에 기여

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면세산업 육성

· < 추 진 방 안 > -

기 본 방 향

정 책 과 제

면세 산업의 경쟁력 제고

-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
-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검토, 특허심사 합리화

면세점 시장질서 확립

- ▶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특허심사 시 감점
- ›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지위남용행위 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

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확대

- 특허수수료 적정수준 인상 (일부 관광진흥 활용)
- **사회적 역할 확대** 면세점 內 중소기업제품 등 판매확대 유도

1 면세 산업의 경쟁력 제고

- ◇ 면세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여 경쟁력 제고
- □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

- 면세점의 안정적.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 간 연장 : 5년 → 10년
 -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,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대
-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·지속적인
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 허용
 - 다만,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**최소한의 요건**과 **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충족** 시 **갱신 허용***
 - * 과거에는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동갱신제로 운영
- □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 : 4월 말 발표 (관세청)
 -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, 시 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
 -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
 - 심사 절차 및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외 신뢰성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

2 면세점 시장 질서 확립

- ◇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특허심사 시 일부 감점
- ◇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적발 시 일정기 간

신규특허에 대한 특허신청 참여 제한

- □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*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 가점수의 일부를 감점
 - *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%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%이 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 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)
 -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필요
- □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발생 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
 - **시장 지배적 사업자**가 「공정거래법」에 따른 부당한 **지위 남**

용행위*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 배제

- *① 상품의 가격 등을 결정·유지 또는 변경,②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,③ 다른 사업 자의 활동을 방해,④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,⑤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 등
- 「공정거래법」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
- 3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확대
- ◇ 특허수수료를 통한 이익의 사회환원 확대 (일부 관광진흥에 활용)
- ◇ 면세점 內 중소.중견기업 제품 판매 확대 지원
- □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,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
 - 수수료는 신규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면세점 별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*: 0.05% → 매출 구간별 0.1% ~ 1.0%

매출 구간	특허수수료 부담 수준		
2천억 원 이하	매출액 × 0.1%		
2천억 원 ~ 1조 원	2억 원 +(2천억 원 초과분 × 0.5%)		
 1조 원 초과	42억 원 +(1조 원 초과분 × 1.0%)		

- **대기업 면세점 22개** 중 12**개**가 매출액 2천억 원 이하
- 특허수수료는 43억 원에서 394억 원으로 약 9.1배 증가
- ※ 중소·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 (0.01%) 유지
- 전체 특허수수료의 50%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여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* 재원으로 활용
 - * 전통문화 체험 지원,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, 지역관광 개선 지원 등
- □ 특허갱신 심사 시 중소.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 부.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을 반영
 - 면세점 내 **중소.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의무 (20%)** 준수 확 인
 - 중소기업 제품 매출 비중, 거래 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적을 갱신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

정책과제	일정	주관·협업부처
【기본방향 1】면세산업 경쟁력 제고		
□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	'16.2분기	기재보
ㅇ 갱신 심사 기준 마련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<u>기재부, 관세청</u>
□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	'16. 4월	<u>관세청</u>
【기본방향 2】시장질서 확립		
□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	'16.3분기	<u>기재부, 관세청</u>
□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발생 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	'16.2분기	<u>기재부</u> , <u>관세청</u>
【기본방향 3】사회적 역할 확대		
□ 특허수수료 인상	'16.2분기	<u>기재부</u>
ㅇ 특허수수료 일부를 관광기금 재원으로 활용	'16.2분기	<u>기재부, 문체부</u>
□ 특허갱신 심사 시 중소·중견기업 제품 고 려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<u>기재부, 관세청</u>